정치관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뇌물수수·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

위반·군사기밀보호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2. 21. 2018고합297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2인

【검 사】조광환(기소), 천재인, 최갑진(공판)

【변호인】 법무법인 열림외 4인

【주문】

1

[피고인 1]

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(부대명 생략)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.

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피고인 2]

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.

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피고인 3]

피고인을 벌금 10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관여의 점은 무죄.

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